

#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 사항 알림

'23.04.18. 시행




국립전파연구원

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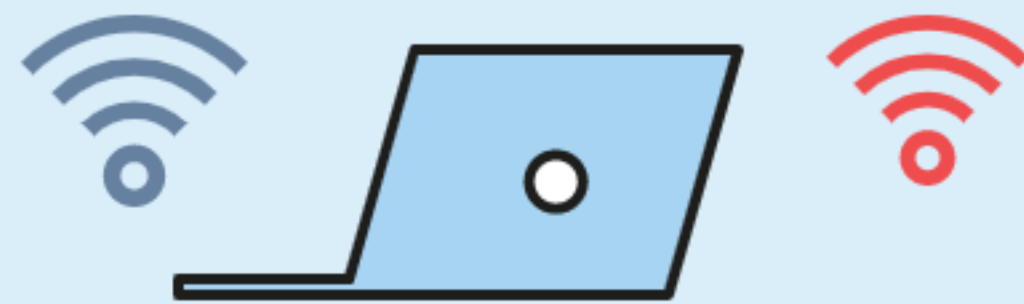
# 01 무선기자재 적합성평가 완화(고시 제15조제1항)

## ① 적합인증 기자재



Wi-Fi 6(2.4GHz, 5GHz 주파수 대역)로 적합 인증받은 노트북(기기부호 : LARN5, LARN8)

## ② 무선기능 추가



Wi-Fi 6e(6GHz 주파수 대역) 무선기능 추가(기기부호 : LARN5B 추가)

변경신고  
가능



개정 이후

적합성평가를 완료한 기자재(예시의 ①노트북)에 무선 기능을 추가하는 경우

▷ (형식기호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와 관계없이) **변경신고로 가능**하도록 함

※ (개정 전) 신규만 가능 → (개정 후) 변경신고 가능



## 변경 신고 불가한 경우(적합등록 기자재 + 무선기능 추가 → 적합인증 기자재)

### ① 적합등록 기자재



RFID용 무선기기(13.56MHz 주파수 대역)로  
적합등록한 기자재(기기부호 : RFID3)



### ② 무선기능 추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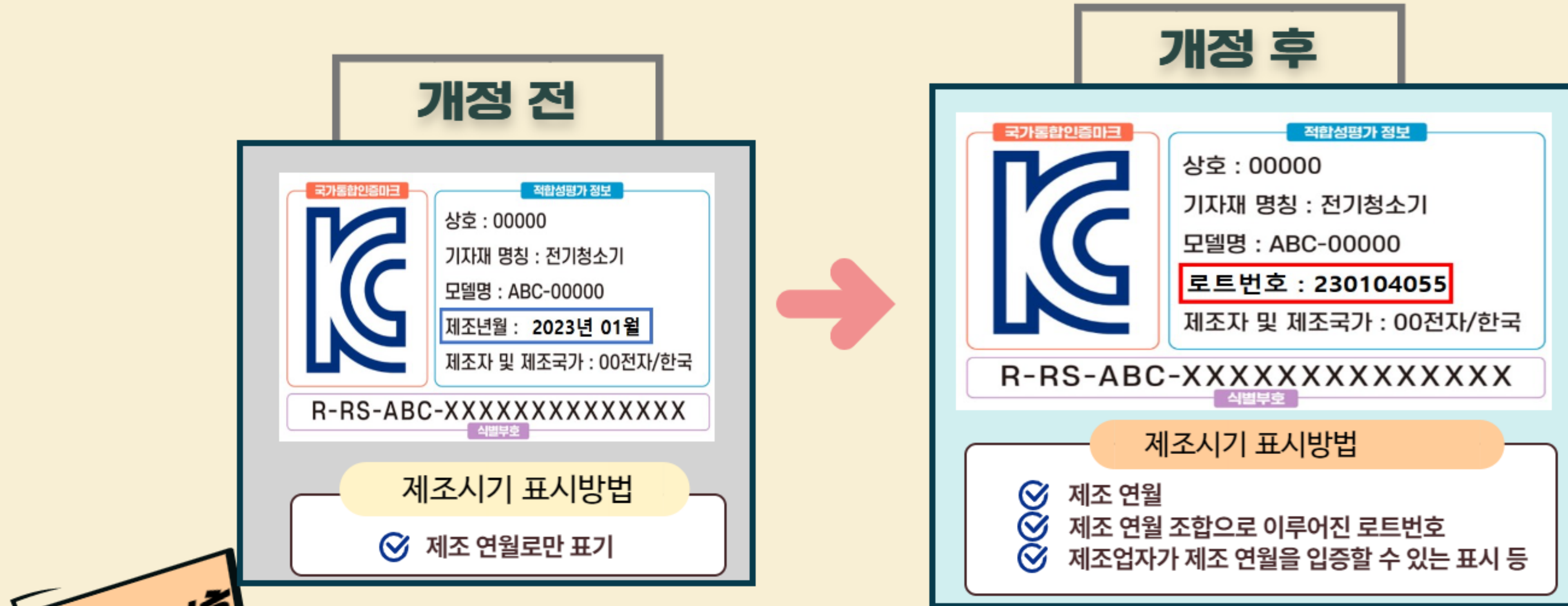


RFID(900MHz 주파수 대역) 무선기능 추가  
(기기부호:RFID1) → **적합인증 대상**



적합등록을 완료한 기자재(예시의 ①RFID용 무선기기)에 무선기능 추가 ▷ 적합성평가 유형이  
변경되는 경우(적합등록→적합인증) ▷ 변경신고 불가, 신규 적합인증 받아야 함

## 02 제조시기 표시방법 다양화(고시 「별표 5」)



**개정 이후**

적합성평가표시 중 '제조시기'는 (개정전) 제조 연월로만 표기하도록 하였으나,  
 ▷ 로트번호, 제조업자가 제조 연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등으로도 표기 가능



## 제조시기 표기 유의사항


소비자가 제조 시기를 알 수 있는 정보(제조 연월, 제조 연월 조합으로 이루어진 로트번호, 제조 연월 조합이 포함되어 제조업자가 제조연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등)을 보고 제조 연월을 알 수 없다면?



사용자 설명서, 포장,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제조 연월을 별도로 표시하거나 제조 연월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

제품에 로트번호를 표기함

(제품)



국가품질인증마크

적합성평가 정보

상호 : 00000  
 기자재 명칭 : 전기청소기  
 모델명 : ABC-00000  
**로트번호 : CV23A01**  
 제조자 및 제조국가 : 00전자/한국


R-RS-ABC-XXXXXXXXXXXXXXXXX

식별부호



제조 연월 별도 표기 예시

(제품 포장에 별도 표기 예)



R-RS-ABC-XXXXXXXXXXXXXXXXX

상호 : 00000  
 기자재 명칭 : 전기청소기  
 모델명 : ABC-00000  
 제조연월 : 2022년 01월  
 제조자 및 제조국가 : 00전자/한국  
**제조연월 : 2023년 01월**

(사용자 설명서에 제조연월 정보 제공 예)

로트번호 읽는 방법	
제조 라인	AA
제조 연도	(00) or (0)
제조 월	A-L
제조 일	00
예시) CV23A01 → 창원 V라인 2023.01.01	



### KC전파인증 업무별 연락처

▷ 적합성평가 제도	☎ 061-338-4711~4715
▷ 적합인증 · 등록 · 변경 · 면제	☎ 031-644-7400
▷ 적합성평가 기자재 사후관리	☎ 031-644-7400
▷ 미인증 기자재 조사 · 단속	☎ 080-700-0074



국립전파연구원

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